#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34

발의연월일: 2022. 10. 4.

발 의 자:김도읍・김미애・박수영

서병수 · 안병길 · 이주환

전봉민 • 정동만 • 조경태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한계 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 자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.

전염병,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부산광역시의 경우 제2의 도시로서 각종 산업,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주된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계상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(2022. 6. 기준) 및 개별 사업체수(2020. 12. 기준)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. 이에 부산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, 부산고등법

원 관할 소재지(울산광역시, 경상남도)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의 경우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부산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1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729호)의 의결을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 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, 간이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, 간이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 생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조(재판관할) ① 제1항에도 불
	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
	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, 경상
	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, 간이
	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
	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
	신청할 수 있다.